

합성수지재질포장재 감량화지침 해설

박 래 / 환경부 폐기물정책과

1. 추진배경

인구증가와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대량생산·소비시대의 도래와 함께 소비패턴은 다양화·고급화되었고 이에 비례하여 제품포장 또한 고급화·재질다양화·다량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95년도에는 제품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전체 생활쓰레기의 32%를 차지하고 있어 폐기물관리정책의 중점관리 대상분야로 부상되고 있다.

제품포장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포장재질 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는 중량기준으로 약 2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매년 그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(연평균 10.5% 증가)에 있으나 재활용실적은 지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. 합성수지재질 포장쓰레기는 소각처리시에도 유해가스발생 등 2차 환경오염 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, 그 재질의 특성이 난분해성이면서 부피가 과대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뿐 아니라 매립장의 비효율적 사용 및 사후관리 기간의 연장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국토가 협소하면서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72% 이상을 매립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담비현상 등에 의한 매립장확보에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.

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에서는 난분해성 포장

쓰레기 발생억제의 일환으로 지난 96년 7월 25일 합성수지재질포장재감량화지침(환경부고시 제96-92호)을 제정·시행하게 된 것이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.

2. 지침의 주요내용

감량화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사용후 발생되는 합성수지재질포장재를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회수·재활용·처리하는 것이며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2-1. 용어의 정의(제2조)

▲ “제조·수입자”라 함은 제품을 제조·구매 또는 수입하여 유통·판매 할 목적으로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포장하는 자(주문에 의한 제조의 경우에는 주문한 자를 말하며, 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)임

▲ “감량화”라 함은 감량·회수·재활용·처리의 총칭임

▲ “감량”이라 함은 대상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수량·중량 또는 부피를 줄이는 것임

▲ “회수”라 함은 제조·수입자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이 발생된 장소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합성수지포장폐기물을 수거하여 모아

둔 장소에서 이를 선별하여 재활용 또는 처리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소까지 운반하거나 판매망을 통하여 합성 수지재질포장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행위임

▲ “재활용”이라 함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을 회수하여 재생연료화·열이용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임

▲ “처리”라 함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을 감량·재활용·매립외의 방법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처분하는 것임

▲ “대상포장재”라 함은 포장규칙 별표에 규정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(공식적인 규격기준이 있는 분해성 합성수지재질은 제외한다)의 포장재임

2-2. 주체별 책무사항(제3조, 제5-8조)

2-2-1. 제조·수입자(포장규칙 제4조에 의한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의 제조·수입자)

▲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상포장재를 연차별로 감량화

▲ 감량화목표율 이행방법의 통지

○ 직접 또는 위탁(공동) 재활용,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 포장재사용 방법중 선택하여 1997년6월30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통지

▲ 감량화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실적의 기록보존

○ 매년 2월말까지 자체 감량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① 대상제품의 생산품목 및 생산제품명별 판매현황 ② 생산제품명별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간사용현황 ③ 감량화목표율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법(감량 또는 회수·재활용·처리)이 포함되어

하며

○ 감량화계획에 의한 추진실적 및 그 중빙 서류를 3년간 보존

2-2-2. 시장·군수·구청장

▲ 제조·수입자가 감량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합성수지포장폐기물의 분리수거에 협조(제3조제2항)

2-2-3. 시·도지사

▲ 관할지역내의 제조·수입자에 대하여 연1회이상 지침 이행실태지도 감독

2-2-4. 환경부장관

▲ 관련단체(한국식품공업협회 등 10개단체)를 통하여 제조·수입자의 감량화계획 수립 및 그 추진실적등 감량화목표율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확인하는 경우 그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송부

2-3. 대상포장 및 감량화 목표율(제4조)

2-3-1. 대상포장

▲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별표에서 정하는 식품류·제과류·건강-기호식품, 화장품류(세제류포함)·완구-인형류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

○ 대상포장의 범위를 연차별로 확대

• 2001까지는 대상제품중 난좌, 컵라면용기, 받침접시류로 한정하고

SA·2002년부터는 대상제품의 모든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료 확대



2-3-2. 이행 목표율 산정기준(표 1 참조)

▲ 목표년도 : 1998년 1월 1일 ~, 2000년 1월 1일 ~

2-4.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의 재활용 촉진(제9~10조)

2-4-1. 재활용방법에 의한 감량화 목표율을 이행하고자 하는 제조·수입자는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대상포장재의 원료생산자 및 제조사, 대상제품의 유통자 및 관련사업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재활용

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

▲ 개별적인 재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동으로 대상포장재를 회수·재활용토록 유인함으로써 합성수지재질포장쓰레기 재활용 촉진

[표 1] 이행 목표율 산정기준

○ 계란발침(난자)

$$\left(\frac{\text{비합성수지재질의 난자단위제품판매수량(개)}}{\text{당해연도의 난자단위 제품 총 판매수량(개)}} + \frac{\text{합성수지재질난자의 회수 · 재활용수량(개)}}{\text{당해연도 합성수지난자 사용수량(개)}} \right) \times 100$$

* 합성수지난자사용수량 = 당해연도의 합성수지 재질의 난자단위 제품 총 판매수량(개) × 0.5

* 0.5는 난자를 평균 2회 100%회수하여 반복사용한 것으로 가정하고, 합성수지재질 난자의 사용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적용된 계수임

○ 계란 팩, 과일포장받침(난자), 컵라면 용기

$$\frac{\text{비합성수지재질의 포장수량(개)} + \text{합성수지재질포장의 회수 · 재활용량(개)}}{\text{당해연도에 판매한 제품에 사용한 포장의 총 수량(개)}} \times 100$$

○ 잡화류제품·종합제품류 포장용 받침접시류

$$\frac{\text{받침 미사용 및 비합성수지} + \text{합성수지재질의 받침접시 사용품목중}}{\text{재질의 받침접시 사용 품목수 } 50\% \text{ 이상 회수 · 재활용한 품목수}} \times 100$$

당해연도 제조·수입제품 총 품목수(품목구분별 제품명 기준)

- 목표년도 : 2002년 1월 1일 ~

○ 포장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식품류·잡화류제품 또는 종합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포장재

$$\left(\frac{\text{비합성수지재질의 포장단위기준 제품수량(개)}}{\text{당해연도에 판매한 포장 단위기준제품 총수량(개)}} + \frac{\text{합성수지재질난자의 회수 · 재활용량(개)}}{\text{당해연도 합성수지난자 사용수량(개)}} \right) \times 100$$

- ▲ 소요재원조성에 관한 사항
- ▲ 회수·재활용·처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- ▲ 대상제품 제조사 등의 60% 이상 참여 약정서 및 기타 관련사업자단체 등의 참여 약정서

2-4-3.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단체 지정시 지정단체에 대하여 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 목표율과는 별도로 회수·재활용목표율을 부여할 수 있다.

2-4-4. 지정된 재활용단체가 별도로 부여된 회수·재활용 목표율을 달성하였을 경우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·수입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목표율을 이행한 것이며 보며, 제6조(감량화 계획의 수립등)과 제7조(감량화실적 등의 기록보존)규정의 이행면제

2-5. 재활용단체의 업무(제11~13조)

2-5-1. 재활용단체의 대표는 재활용단체로 지정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의 회수약정 체결

- ▲ 회수약정사항
 -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을 회수할 지역
 -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을 회수할 물량
 - 회수약정을 위반한 때의 조치사항
 - 기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▲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약정 체결사항을 체결로부터 15일 이내에 약정내용을 공고

2-5-2 매년 2월말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과 시·도지사에게 제출

- ▲ 환경부장관이 부여한 회수·재활용·처

리목표율을 반영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

○ 재활용실적 산정은 대상포장재 및 대상제품의 구분없이 합성수지재질의 포장폐기물의 재활용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

- ▲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
- ▲ 참여하고 있는 제조·수입자 및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현황
- ▲ 기타 회수·재활용·처리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

2-6. 재활용단체의 사업촉진(제14조)

2-6-1. 환경부장관은 대상포장재의 원료생산자 및 제조사, 대상제품의 유통자 및 관련 사업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를 권고할 수 있다.

2-6-2 재활용단체는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·수입자가 제조·수입하는 제품의 포장에 재활용 단체에 참여하였음을 표시하는 고유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(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(단,감량화계획이 수립에 관한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). ☐)

월간 「포장계」는 포장인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.
어떤 소재 리도 좋습니다.
포장분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.
소재나 내용을 받습니다.
TEL : 780-9782